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78
------	-----

2023. 04. 25.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3월 24일, 옥재은 의원(강석주 의원 외 찬성 의원 55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4월 3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8회 임시회】

-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23.4.2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옥재은 의원)

1. 제안이유

- 그동안 우리나라 일상생활에서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 를 사용하고 있고, 일부 법률에서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연 나이’ 를

사용함에 따라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따라 2022년 12월 27일 「민법」 및 「행정기본법」을 일부 개정하면서,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함을 명확히 규정하였음.
-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기존에 사용하던 “만 ○○세”를 “○○세”로 개정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를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만 ○○세”로 규정하던 것을 “○○세”로 변경함.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조례안의 개요

- 조례안은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 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를 서울특별시 조례에 일괄적으로 반영하여 입법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됨.

나. 조례안의 일괄개정 사항

- 그동안 우리나라의 행정이나 법률 분야에서는 ‘만 나이’가 연령

계산 방식의 기준이었으나, 일상생활에서는 ‘세는 나이’가 사용되고, 「병역법」, 「청소년 보호법」 등 일부 법률에서는 ‘연 나이’가 각각 혼용되어 왔음.

<나이 계산 방식 및 사례(1960.4.25.생)>

구 분	계 산 법	내 용	2023. 4. 25. 기준	
			이전	이후
세는 나이	출생일 기준 1살로 시작해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태어날 때 1살, 새해마다 +1살)	한국식 나이 계산법	64세	64세
만 나이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해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계산법 (태어날 때 0살, 생일마다 +1살)	국제적 통용기준	62세	63세
연 나이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생일과 무관) 해당연도 출생자를 모두 같은 나이로 계산해 동일 기준 적용	- 「청소년보호법」 - 「병역법」 - 시험 응시 나이 - 법 집행의 효율성 - 행정편의	63세	63세

-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와 공식적인 법률관계에서 사용하는 나이의 계산과 표시가 각각 달라, 각종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정부는 다양한 나이 계산법으로 인한 혼선과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내용으로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2022. 12. 27.)함(2023.6.28. 시행).

< 「민법」 과 「행정기본법」 의 개정 전후 비교 >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전	개정 후	개정 전	개정 후
<p>제158조(연령의 계산)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p>	<p>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①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 하고, 연수(年數)로 표 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 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p>

- 조례안은 연령에 대한 기준을 만(滿) 나이로 일괄정비하여 법률 개정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고 나이 적용을 둘러싼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 바람직한 입법조치라 할 수 있음.
- 다만, 조례안에서 일부 누락된 정비대상이 존재하고 있어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음.

<수정의견>

조례안	수정의견
<p>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p>	<p>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p>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수정안요지

가. 수정이유

-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滿)나이로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〇〇세”로 규정하던 것을 “〇〇세”로 일괄 개정하는 사항 중 일부 미반영된 조문을 수정함.

나. 수정안의 주요 내용

- 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정비 대상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해 수정함

VI.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찬성위원 8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578호
----------	---------

제안년월일 : 2023년 04월 25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나이 계산을 만(滿)나이에 통일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만〇〇세”로 규정하던 것을 “〇〇세”로 일괄개정하는 사항 중 일부 미반영된 조문을 수정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안 제16조 중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서 정비대상 문구가 누락되어 이를 추가해 수정함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조례안	수정안
<p>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u>한다.</u></p>	<p>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18세”를 “18세”로 <u>하고, 같은 조 같은 항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u></p>

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법규와 다르게 나이에 만(滿)을 표시하는 규정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같은 조 제4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동청소년 보호 및 고용 우수업체 선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호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명예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울상상나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어르신(만 65세 이상)”을 “어르신(65세 이상)”으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만 12세 이상 만 19세”를 “12세 이상 19세”로 한다.

제8조(「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19세 이상 만 39세”를 “19세 이상 39세”로 한다.

제9조(「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0세 이상 만 19세”를 “10세 이상 19세”로 하고, 제4조 제2항 중 “만 21세”를 “21세”로 한다.

제11조(「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 40세 이상 만 65세”를 “40세 이상 65세”로 한다.

제12조(「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직업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13조(「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제21조제4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4조(「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 장애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15조(「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년주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만 39세”를 “39세”로 한다.

제16조(「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9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0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17조(「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2호 중 “만 40세”를 “40세”로, 같은 조 제4항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18조(「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